



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 
심 사 보 고 서

심 의 안 건

1.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[의원발의]
2. 금산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3.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4.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5.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6.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7.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8.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행정복지위원회

#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45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 안 자 : 최명수 의원 등 3인
- 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 정 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최명수 의원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적용범위(안 제4조)
- 설치(안 제5조)
-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(안 제6조, 안 제7조)

- 시설의 유지관리(안 제8조)
- 안내문 게시, 관리대장의 작성관리(안 제9조, 안 제10조)
- 영조물배상공제 및 손해배상(안 제11조, 안 제1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그동안 우리군의 야외운동기구는 명확한 관련법이나 지침 없이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 및 관리하였으나,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조례를 통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「체육시설법」 제4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8조, 「국가배상법」 제5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별첨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.

# 금산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2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 안 자 : 금산군수
- 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 정 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길상현 기획예산담당관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국가정보원 대통령령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의 일부개정(‘24. 3. 5. 시행)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·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
- 지도·감독(안 제4조)
-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정보원 대통령령인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에 대해, 안 제5조는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검토 결과,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,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### 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별첨 금산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1부.

#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3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안자 : 금산군수
- 다. 회부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정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길상현 기획예산담당관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등의 제정에 따라 “문화재”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정비하고
-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을 반영 및 보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·개정 사항 반영(안 제1조~제21조)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등의 제정에 따라 “문화재”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

(안 제22조~제30조)

- “장애인” 관련 용어 정비 (안 제31조~제32조)
- 기타사항 정비 (안 제33조~제41조)
  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 미비 사항 개정
  - 부서명칭 미반영 사항 보완 등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·개정으로 인한 용어, 인용 조문, 부서명칭 변경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등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「국가유산기본법»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»,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»,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, 「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등 41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□ 별첨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.

#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4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 안 자 : 금산군수
- 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 정 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손계원 자치행정과장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
-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  -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 추가 :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
-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(특별휴가) 마련
  - 보육휴가 확대

(기존)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모두 사용 시 보육휴가 5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)부여

(개정)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모두 사용 시 보육휴가 5일(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)부여

단, 자녀 질병 시 권장 연가일수 미 사용 시에도 보육휴가 사용 가능

#### - 가족행복시간 신설

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행복시간 부여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, 보육휴가 확대, 가족 행복시간 신설 등 공무원 사기 제고와 더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
- 그밖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제1항, 제2항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별첨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5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 안 자 : 금산군수
- 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 정 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손계원 자치행정과장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**수정가결**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새마을지도자 용어의 뜻 신설(안 제2조제4호)
  - “새마을지도자”란 새마을회원 중 읍·면 회장 및 읍·면 산하

각 리 단위의 남·녀 회장을 말한다.

-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의2)
-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, 읍·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참석할 경우, 각 읍·면, 리 새마을회원의 남·녀 회장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여기서 “법령의 범위”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, “그 사무”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를 의미하고 있음.
-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, 법제처 누리집의 “의견24 - 0171”, “의견22 - 0071” 의 천안시, 철원군 사례에서,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, 이에 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의 예외규정에 해당 되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하고 있음.
- 먼저, 회의수당 지급이 소관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, 읍·면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려는 목

적이,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회의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, 군수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법제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,

- 다음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1호의 “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,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, 이는 해당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지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며,
- 마지막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,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새마을운동조직은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단체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임.
- 결론적으로,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의 법제처 의견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, 예외적

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- 또한,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수당 지급은, 국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며 그 조직의 규모가 유사한,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, 한국자유총연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.
- 다만, 또 다른 법제처 의견으로 법제처 누리집 “의견23-0216” 과 “의견23-0277” 의 구리시와 고흥군의 사례에서는,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들에게 “교통비 등 실비” 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, 필요하다면 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.
- 그러나, 여기서도 주목하여야 할 점은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 지급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는바, 교통비 등 실비와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 편성목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그 용어 및 지급대상을 달리 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 법제처의 부정적 의견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우려에도 불구하고, 새마을운동조직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사안은,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조직이 금산군 지역발전에 지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점과, 충청남도의 주도하에 충남 15개 시·군 전체에 확대시키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,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수정가결**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○ 수정 이유

-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보다 현실적이고,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참석수당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도록 “새마을지도자”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.

○ 수정 내용 : 수정안 참조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□ 별첨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#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6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 안 자 : 금산군수
- 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 정 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손계원 자치행정과장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으로 자원봉사참여의 선순환 구축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 - 자원봉사수요자, 우수자원봉사자,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규정 신설
-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(안 제19조의2, 부칙 제2조)
  -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- ①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- ② 금산군 공영주차장 주차료 50% 감면
- ③ 금산다락원 일반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
- ④ 금산다락원 수영장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 50% 감면
  -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,0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
  - :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(건강검진비, 간병비) 지원

구분	우수자원봉사자 혜택	관련부서	비 고
1	활동보상서비스* 지원 *건강검진비, 간병비	자치행정과	개인별 봉사시간 차감
2	제증명 수수료(등·초본) 면제	재무과	우수자원봉사자증* 제시 *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
3	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	건설교통과	
4	다락원 <b>이용료*</b> 감면 *프로그램 수강료, 수영장 이용료 등	금산다락원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자원봉사 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정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주민에 대하여 활동 보상 서비스로 각종 수수료, 주차료, 수강료 등의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, 나눔과 협력의 봉사문화 확산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위와 같은 사후 보상적 개념의 혜택이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정신을 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, 금산군과 자원봉사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그밖에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,

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별첨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7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안자 : 금산군수
- 다. 회부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정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및 장애인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교육 및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(안 제7조,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조례 제정안은 해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,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자,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,
- 제정안에는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 및 장애인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,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.
- 그밖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9조, 제25조, 제58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,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□ 별첨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
#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39호
----------	-------

2024. 11. 27.(수)  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4. 11. 14.
- 나. 제 안 자 : 금산군수
- 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4.
- 라. 상 정 일 : 2024. 11. 27. (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손종건 인구교육가족과장
 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위기청소년에 대한 직접사업 수행, 금산군 특성에 부합되는 청소년 안전망사업 등을 청소년 활동·복지·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, 민간단체, 대학(학교법인)에 위탁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
- 종전 학교법인(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)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선정, 재위탁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- 재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간)

- 필요성 :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위탁
- 위탁사항(범위)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
- 위탁대상 시설 현황

시설명	직원	주소지	시설규모	주요시설
금산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	7명	금산읍 인삼로 17 (청소년미래센터 내)	221㎡	사무실, 개인상담실, 집단상담·심리검사실

- 수탁기관의 조건
 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, 제8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총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(단체) 또는 전국 법인(단체) 중 금산군에 분소를 두고 있는 법인(단체)
- 위탁조건
 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», 「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», 여성가족부 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», 위·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
  -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
  -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·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(종교·정치)의 활동을 금하며,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
  - 보조금 이외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
- 수탁기관의 선정
  - 조건을 갖춘 수탁기관 공개모집
  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)
  - 선정기준 :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

- 수탁자 선정심의회(면접 심의)로 기준점 이상 단체 중 최고점을 획득한 청소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,821,303천원(5년간)
- 2024년 기준 연간 지방비,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으로 추정
- 2024년 예산 : 323,329천원(기금 97,196 / 도비 21,311 / 군비 204,822)

○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: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,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함

○ 추진 일정

- 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 절차 수행 : 2024. 11월중
-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공모 : 2024. 11월말
- 수탁자 선정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심의·의결 : 2024. 12월초
-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: 2024. 12월중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통해 해당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2조 및 「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」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, 금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

년들에게 상담 및 긴급전화 서비스, 위기청소년 긴급구조, 심리  
검사, 자활지원 교육,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 
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,
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그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 
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목적과 사무 수행방식 등을 고려할  
때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3명, 찬성 3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별첨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부.